

2025-1-04

제2차 성평등 민주주의 포럼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과제와 쟁점

- '성평등가족부' 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2025. 6. 24. (화) 14:00~17:00

창비서교빌딩 50주년 기념홀(B2)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회

후원

FRIEDRICH
EBERT
STIFTUNG
FES Korea

2025-1-04

[제2차 성평등 민주주의 포럼]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과제와 쟁점

- '성평등가족부' 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 2025년 6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창비서교빌딩 지하 2층(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회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순서

구분	프로그램
	※사회 : 황정미 (사)한국여성연구소 부소장
발표	1.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과제와 쟁점 - ‘성평등가족부’ 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이경숙 (젠더정의연구소 소장)
패널	• [토론 1]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과제와 쟁점 : 가족·돌봄 중심으로 -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토론 2] 성평등 정책 강화 및 아동·청소년 정책 통합 방안 -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 • [토론 3]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과제와 쟁점 : 지역의 경험을 중심으로 - 박혜경 (전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여성학 박사) • [토론 4]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국가 행정체계를 위한 제언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질의 응답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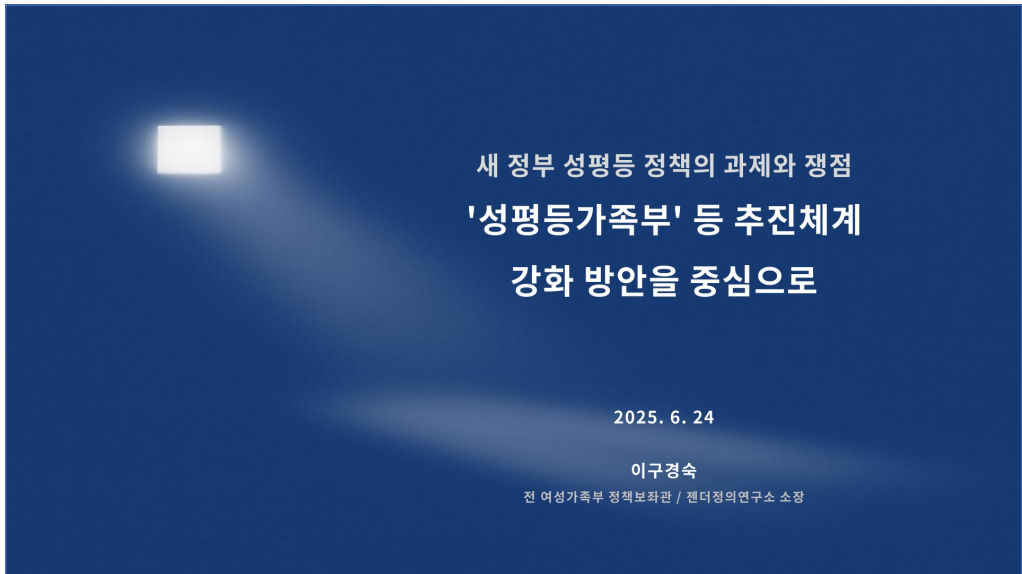
목 차

-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과제와 쟁점 - ‘성평등가족부’ 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7
이경숙 (젠더정의연구소 소장)
- [토론1]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과제와 쟁점 : 가족·돌봄 중심으로 ... 15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토론2] 성평등 정책 강화 및 아동·청소년 정책 통합 방안 21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
- [토론3]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과제와 쟁점 : 지역의 경험을 중심으로 27
박혜경 (전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여성학 박사)
- [토론4]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국가 행정체계를 위한 제언 35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발표]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과제와 쟁점 - '성평등가족부' 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경숙 (젠더정의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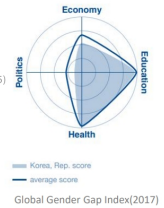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2025 대선 공약

-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겠다
-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정책담당관 확대, 지자체 내 전담부서 확대
-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음
-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 고려

☞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개편 제안

2017 & 2025 성불평등 현황

SCORE AT G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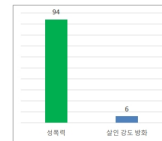


- 경제적·정치적 불평등
 - 성격차지수 : (100개국 표준화) 81.9('17) → 67.8('22) → 68.2('25)*
 - * 118위/144개국('17) → 99위/146개국('22) → 101위/148개국('25)
 - 경제적 참여 및 기회와 정치적 역량 분야 저조
- 젠더폭력 심화
 -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 급증 : 5,185건('16) → 20,127건('23)
 - 온라인 여성혐오 심각 : 소라넷 폐지운동
- 저출생 심화와 돌봄 위기
 - 합계출산율 : 1.05명('17) → 0.72명('23)
 - 아버지 육아휴직률 : 1.8%('17) → 7.4%('23)
- 가족 다양성의 증가
 - 1인 가구 증가 : 417만('10) → 533만('16) → 783만('23)
 - 결혼 반드시 해야 함 : 64.7%('10) → 51.9%('16)
 -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페널티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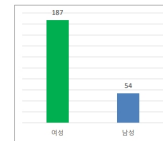
확대·개편 필요성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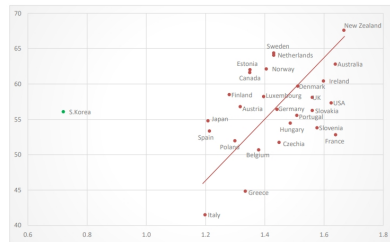
- 구조적 성차별 해소로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성평등·민주주의 국가로 회복
 - 심각한 수준의 남녀 간 임금·돌봄·연금격차, 경력단절과 유리천장 지수, 유난히 높은 성폭력 비율 →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 근절 필요
- 성평등한 저출생 정책으로 출산의 선택 조건 마련
 - 성평등과 돌봄에 대한 존중 없이 저출생 극복 없음
 - 젠더 관점에서 여성노동정책과 WLB 정책, 가족정책과의 연계 및 조정 필요
-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정책을 통한 사회통합
 - 청년 세대 내 인식 격차를 줄이고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역할 확대 필요
- 부처 간 균형 행정
 -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필요
 - 중앙 부처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 규모와 인적 구성, 전달체계 필요 (중앙 부처 공무원 현원 : 평균 2,580명 - 5,809명('23))



[강력범죄 중 성폭력비율('22, %)]



[맞벌이부부 가사노동시간('22, 분)]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23)]

정책환경

-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여성가족부는 폐지의 기로에서 심각한 정책 위축과 퇴행 경험
 -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22)
 - 장관 공석('24. 2월 이후)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예산 전액 삭감
 - '여성', '성평등' 용어 삭제와 제도의 축소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 시도
 -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급감
- 소속 공무원들의 심리적 위축감과 소극적 태도 강화
- 성평등과 페미니즘의 개념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비하, 페미니즘 백래시 심각 → 적극적 대응 필요
- 소위 '젠더갈등'을 이용한 정치적 동원 전략이 일정 성과를 거둔 이후, 보수정권은 물론 민주당정부에서도조차 성평등 이슈 회피·외면 → 사안에 따라 전략적 대응 필요
- 이재명 대통령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약속으로 성평등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정치적 기회 구조)



(일리스트: 서티스톡, 출처: 김현제의 상담)

여성가족부 개편방향의 쟁점

대상 부처로서의 한계 및 총괄·조정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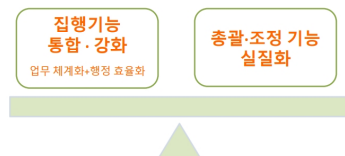
- 대다수 부처에서 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업무 집행 중
- 타 부처에서 하지 않은 업무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구성됨
-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낮은 권한 등으로 총괄·조정력의 한계
 - 예) 임신중절법안 논의회의, 불법촬영 대책 마련(1차)

성평등위원회 강화 ?

- 현재 양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형식적 심의·의결기구 기능 →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 강화?
- 실질적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시급 → 성 주류화 업무 직접 집행?

[부처별로 분점돼 있는 여성·가족정책 예시]

분야 부처	여성노동정책	젠더폭력정책	가족정책	아동 돌봄 (보육·방과후돌봄)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여성 가족부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 경단예방·재취업, 직업훈련 · 여성일자리창출 지원, 구인·구직장보, 경력실계(노동부 병행)	· 피해자 보호 · 젠더폭력 예방·교육	· 한부모, 다문화 등 취약가족지원 · 가족상담·교육	· 아이돌보미 · 공동육아나눔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아동청소년 성보호, 피해자 지원 · 청소년 보호·자립 활동
타 부처	(노동부) · 모성보호제도, WLB, 유연근로, AA · 직장내 성희롱· 성차별, 직장여성이집	· 성희롱·성차별 조사 (인권위) · 가해자 수사(경찰청) · 불법촬영(법무부) · 불법영상을 심의 차단 (방송위)	· 출산장제(복지부)	(방과후 돌봄) · 지역아동센터(복지부) ·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 놀봄학교(교육부) (영유아 보육) · 0-2세 어린이집(복지부) · 3-5세 유보통합(교육부)	(복지부) · 출산·입양 · 아동 보호·자립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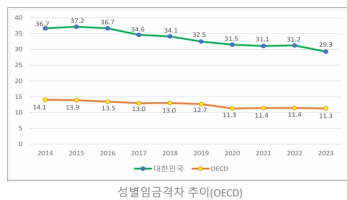


성별 인식 격차 축소

- 성평등한 조직문화 혁신에 집중 투자
- 성평등에 대한 인식격차 해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소년·남성의 참여 확대

성별 고용 격차 축소

- 성별임금격차 축소, 경력단절여성 비율 축소 등 고용상 성차별 해소
- 여성고용을 확대, 여성 비정규직 축소 등 여성노동권 강화



성별 돌봄 격차 축소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실질적 제도 이용률 상향
- 특히, 중소기업 및 불안정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등 이용률 확대
- 가족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남성의 가족 돌봄 역량 강화 지원

→ 새 정부, 성별격차해소 5개년 목표 &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해야



성평등가족청소년부 확대 개편 방향 1

정책조정·협력을 위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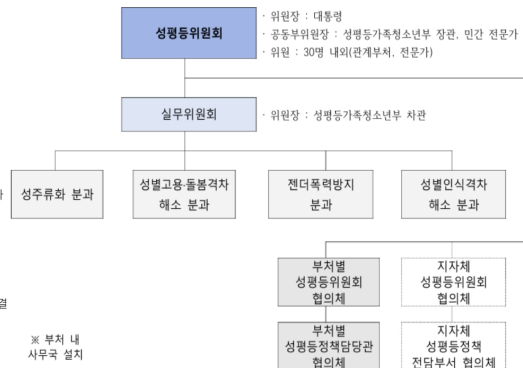
- ① 부처(성평등가족청소년부) 기능 확대·강화
: (현행) 2실 2국 4관 → (개편 후) 4실 1국 9관

* 청소년계의 요청 및 독일 사례에 따라 부처 명칭에 '청소년' 포함

- ② 성평등위원회 강화(사무국 설치) 및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 (위상)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 강화
- (조직) 실무위원회와 분과 운영 실질화, 중앙 부처 및 지자체의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의 협력 체계 강화
- (운영) △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내 '성평등위원회 사무국' 설치, △ 공동 부위원장(민간)이 상시 업무 총괄
- (의제) △ 부처별 새 정부의 5개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점검, △ 분과별로 중장기 속의가 필요한 정책 과제 논의, △ 미래기획 아젠다 생산 (예: 방역제도, 비동의강간죄, 주4.5일제 등 주요 국정과제)
- (논의과정) 해당 분과 논의로 정책 개선안 도출 →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중앙부처에 개선 지시 및 지자체에 개선 권고

- ③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독립기구) 신설
: 사건 조사권 및 시정명령권 확보



성평등가족청소년부 확대 개편 방향 2

9

성평등 정책의 강화

① 저출생 정책 총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출산장려정책 + 고령사회 정책 + 인구정책을 혼재시켜 수립, 20여년간 정책적 성과 저조
-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요인(교육, 주거, 노동) 외 제도·인식적 요인(여성고용지속, 일·생활균형, 돌봄, 젠더규범)에 따른 정책을 인구정책의 틀에서 분리하여 성평등 정책으로 전환

☞ 저출생정책총괄국 신설



② 성평등 노동정책 강화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넘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고용유지 정책 중점 추진(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24 개정)
- 성별임금격차, 가사·돌봄의 평등한 분배 등 각 부처의 고용 및 돌봄 정책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제도 개선

☞ 고용평등정책관 신설(기존 2개과 확대)

- + 총괄·조정(성평등위원회)
- + 시정 기능(조사위원회) 간 협력

③ 소년·남성과 함께 하는 '성평등 문화·의식 전환'에 집중

- 소년과 남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 개발, 대안적 젠더 규범을 만들어가기 위한 미니 공론장 운영,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 캠페인, 남성 고충 상담 등
- 국가기관과 기업 등에서 성희롱 방지 및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실질적 이용 확대를 위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 교육 등 실시 및 대안적 조직문화 개선 권고

☞ 성평등균형정책과, 조직문화혁신과 신설



스웨덴 <남성 육아참여 캠페인> 포스터 (모험·출판적 적도 김대일(아스트))

성평등가족청소년부 확대 개편 방향 3

10

성평등 정책의 강화

④ 젠더폭력 대응 전담 부처로서의 실질적 권한 강화

- 계속 진화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전 감지 및 대응(집중 모니터링)
- 성차별·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명령권 확보

☞ 디지털성범죄예방과,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 신설

⑤ 실질적 성주류화

-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이 성평등하게 집행되도록 정책 개선 기능 강화

☞ 투 트랙(성별영향평가과 강화 및 성평등위원회 내 성주류화 분과 신설)으로 성주류화 실질화

※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독립위원회)

- (위상)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장과 조사관이 부처와 독립적으로 사건 조사 및 판단, 시정 권고 → 시정권고 불이행시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장관의 시정명령 (성차별·성희롱조사위원회 법률(가칭) 제정 필요)

- (조직) 성평등가족청소년부와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되, 부처에서 행정 지원

- (의제) 국가기관등 및 사업장의 성차별·성희롱 사건 조사

- (비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 시행 →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가족 정책의 강화

① 성인기 이전의 아동·청소년정책을 가족 정책으로 통합

- 유사 연령의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비일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정책의 사각지대 또는 중첩 문제 발생
→ 분절적 정책들을 통합하여 효율화·체계화
- 가족관련지출(GDP 대비 1.56%)을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 3.24%, 프랑스 3.44% 수준으로 확대

☞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신설

② 보편적 돌봄·가족정책 수립

- 1인 가구, 가족돌봄 및 은둔 청(소)년 등 다양한 가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 모든 시민의 돌봄권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돌봄 및 가족정책 수립(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돌봄기본법 제정)

☞ 돌봄정책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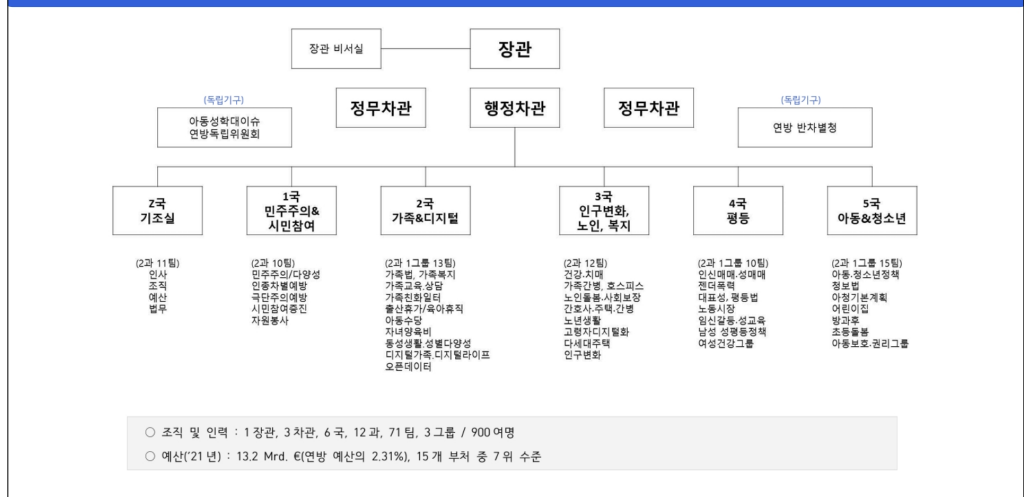
<세 부처에 나뉘어 있는 아동·청소년·가족 정책>

	여성가족부	복지부	교육부
방과후 보육	- 아이돌보미 - 공동육아사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놀봄학교(방과후)
아동·청소년 지원	- 은둔 청소년 지원 - 학교밖 가정학 청소년 지원 - 도박, 게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 청소년활동 진흥	- 은둔 청년 지원 - 아동학대 - 취약아동보호, 입양 - 아동수당	- 유아 보육 교육 (유보통합)
가족	- 한부모, 이혼모 - 양육비 이행관리 - 위기가족 지원 - 다문화 가족 지원 - 가족친화기업 인증 - 다양한 가족 지원	- 출산 지원 - 모자보건법(인공임신 중절)	



(참고) 독일 연방정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조직도 (*22. 7. 12일자)

13



14



Contact

010-2813-0089

E-mail

purpletree29@gmail.com

[토론1]

새정부 성평등가족부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한 제언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성평등가족청소년부’ 확대 개편 제안에 대하여

- 성평등정책과 거버넌스 : 정책의 주관 부처로서 성평등가족부의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두고 부처를 횡단하는 성평등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전반적 방향에 동의함. 특히 대부처화와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사이의 관계는 상보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정책집행부처로서 성평등청소년가족부에 성주류화 및 성평등정책 주요 영역의 정책을 집중시켜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면서, 부처를 횡단하는 성평등정책 영역의 정책 조정을 위해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종적, 횡적 연결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추진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함.
- 정부부처는 정부조직법에 정해진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에 따라 법률로 설치되고,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와 정하고 있으며, 이 사무의 범위는 소관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하게 됨. 정부조직법 개편을 전제로 「성평등청소년가족부」의 직무범위가 “성평등정책의 기획·조정·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성차별의 해소, 아동,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최소한 포함 하는 것으로 우선 개정되어야 할 것임.¹⁾
- 성평등가족청소년부가 집행하는 정책 영역 중 성평등정책의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을 보편적 가족정책의 틀 안에 재배치하게 되면 성평등정책과 가족정책이 부처의 핵심 정책 줄기로 자리잡게 됨. 기존의 소관법률 중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원회 위상 등과 관련된 약간의 개정

1) 저출생정책총괄국과 돌봄정책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뒤에 좀 더 이야기 할 것임.

이 필요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하여 정책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임. 특히 기존 여성정책국의 기능을 성평등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두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성평등정책 추진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소년·남성과 함께 하는 성평등정책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어서 확대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쉬울 것으로 사료됨.

- 발제자의 제안 중 저출생정책총괄국, 돌봄정책관,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의 경우 입법과 부처간 업무 조정 및 정책영역 신설 등에서 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음.

(1) 저출생정책 총괄관

- ▷ 저출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성평등정책과 연계하여 출산과 양육을 원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추진하려면,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법개정 및 추진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함.
- ▷ 위 법에는 출산장려 + 고령사회대응 + 인구정책의 성격이 혼재해있음. 기존의 기본계획들도 세 가지 정책 내용을 정부 성격에 따라 배합하여 수립해왔음.
- ▷ 문재인정부에서는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성평등 관점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시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정책은 인구정책TF를 통해 별도로 총괄조정하는 시도를 하였음. 저출산정책의 방향을 출산장려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로 전환하고, 정책대상 가족도 법률혼 및 다자녀 가족 중심의 정책을 아동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 ▷ 윤석열 정부에서 인구 관련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상당수 발의된 상태이고, 이재명정부는 미래사회의 중요 아젠다로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인구비서관실을 신설하였

음.

- ▷ 신설된 인구비서관실이 전향적으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넘어서는 인구정책기본법 제정과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을 준비하여야 함. 인구정책의 정책 영역으로는 생산연령인구 및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및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 노동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정책,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및 병력구조의 정예화, 성평등 시민복무제의 도입검토, 지역 공동화 대응을 위한 공공 서비스 체계의 효율화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음.
- ▷ 따라서 저출산 정책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편적 출산·양육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정책과 연관성 속에서 시행하고 인구정책은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분리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도록 입법적 틀의 변화가 필요함.

(2) 돌봄정책관

- ▷ 돌봄정책과 관련된 정책기능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편재되어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정책 기능과 범위가 절대적임.
- ▷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돌볼권리와 돌봄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돌봄권 보장을 위해 돌봄기본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 ▷ 기본법이 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도 보편적 가족정책의 틀을 확대하고, 이와 병행하는 성평등가족부 주도의 돌봄정책에 대한 구체적 틀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성희롱·성차별 조사위원회

- ▷ 노동위원회, 인권위원회에 조사 기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독립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입법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설치될 경우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줄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임.
- ▷ 중복기능의 필요성은 미투운동 국면에서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고위직 사건은 해당 기관 사건 처리가 어렵다는 점, 인권위 및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 속도 및 접근성에 대해 미진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

재한다는 점을 들어 설득 가능.

- ▷ 기존 입법례 :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8.3.13.)」: 인권위 개선권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 부여**,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18.3.26.)」: 인권위 개선권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위한 조사 권한 부여**

□ 부처의 권한 및 기능 강화는 더 넓은 정책(정치) 거버넌스를 통해 뒷받침될 필요

- 성평등정책의 주관 부처로서 여성가족부는 부처 정체성을 확립해오는 과정에서 기능강화론과 폐지론 사이를 널 뛰면서 정치환경변화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
 - 김대중정부가 여성계의 염원에 응답하여 여성부를 독립부처로 설치한 이후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처의 기능을 확대하고 성평등정책을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윤석열정부를 거치면서 여성가족부는 축소와 폐지의 위협에 거듭 처하게 되고 그 위협의 수위는 점차 거칠고 전방위적인 것으로 변화해왔음.
 - 민주정부 성평등정책 추진동력의 정점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이 전제되지만,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매 정부마다의 성과와 한계는 그 시기 정책환경 속에서 제약되고 결정되는 측면이 있음.
 - 이재명정부도 성평등정책에 대한 비토세력에 맞서 성평등가족부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고,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부터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전선에서 성평등정책, 보편적 가족정책, 젠더 인식격차 축소정책 등에 대한 공격을 예상할 수 있고, 이미 이전 정부에서 경험한 바도 있으며, 공격의 강도와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연대해서 반격할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움.
- ▷ 정책 수립과 추진의 방향을 견인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정책 진전에 대한 지지를 유연하게 해낼 수 있는 여성운동, 여성계 및 학계, 시민사회와의 느슨한 거버넌스가 필요함. 이같은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

과정에 대한 정보를 소통하고, 필요한 자극과 압력을 행사하면서도 정책 성과와 긍정적 방향으로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기대함.

- ▷ 학문 및 행정, 정책의 후속 세대를 위해 정책경험을 개별적 경험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 경험으로 축적하고, 토론을 통해 확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토론2]

성평등 정책 강화 및 아동·청소년 정책 통합 방안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

새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 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여성가족부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한계, 기능적 비효율 등을 해결해야 가능한 과제다.

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일할 때 이 부서의 기능, 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점으로 성차별 시정 권한이 없다는 점, 성 주류화를 실질적으로 관철할 수단이 없다는 점, 아동·청소년 정책의 분절 등 세 가지를 꼽겠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의 개선방안을 모두 포함한 발표자의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과하거나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지점을 토론하고자 한다.

◆ 저출생 정책 총괄

저출생 정책을 “인구정책의 관점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발제자의 시각에는 동의하나,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안에 저출생정책총괄국을 두는 것은 실효도 없을뿐더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출생은 그 자체로 어떤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여성고용, 일-생활균형, 돌봄, 젠더규범을 비롯하여 인구의 수도권 집중, 주택, 교육, 노동 등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진 ‘결과’다. 이 사안을 총괄해야 할 정부조직은 집행부서가 아니라 저출생이라는 결과를 빚어내는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 모든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정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출생 정책의 총괄을 수평적 행정부처 안에 두는 것이나 성평등정책만 저출생 정책에서 분리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성평등적 관점의 저출생 대책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내에 총괄국을 둘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 조정기구에 참여하여 제공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다.

그간 여성가족부에서 모든 부처에 해당하는 성 주류화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데에는 소규모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행정부처 간 정책 조정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었던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 신설

성차별을 시정하는 정책기능은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한 채 피해자 지원에 국한한 정책을 다뤘었다. 그런 점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가 성차별·성희롱의 조사 권한을 갖는 것은 부서가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발제자가 제시한 성차별·성희롱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에 흡여져 있는 고용성차별, 성희롱 조사, 시정 업무가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해당 업무를 맡은 정부 기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업무의 이관 없이 중복을 전제로 한 위원회의 신설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업무의 중복을 피하려면 인권위, 노동위가 맡는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 중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의 사건, 구조의 개편을 수반하는 사건, 공공기관 고용의 성차별 등 특정한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성희롱에 대해 성평등가족청소년부가 시정명령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차별화 방법을 더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성평등 노동정책 강화

발제자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직제 중 성평등정책실 하에 고용평등정책관(국)을 제안하였다. 이 고용평등정책관(국)이 현재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는 업무를 이관받아 신설되는 국인지 아니면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의 업무를 확대 수행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다소 불분명하다. 후자라면 ‘고용평등정책관’보다 ‘성평등노동정책관’이 더 타당한 직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고용평등과 관련한 법률은 고용노동부 관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가족부 관할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

절 예방법'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등이 있다. 성평등가족청소년부가 성평등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의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과의 연관성 등으로 인해 고용평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평등 전반을 총괄하는 고용평등정책관이 아닌 성평등노동정책관을 신설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규정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고용유지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 전반을 고려하여 노동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법'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업무를 가족국이 맡고 있는데 이 역시 성평등노동정책관으로 이관해 젠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성평등위원회 위상강화

성 주류화는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의 법적 체계가 확보되어 있지만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 유명무실하다시피 한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발제자가 제안한 성평등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한, 대통령 산하로 격상하는 것에 의해 실질적 성 주류화가 가능해질지는 의문이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각 부처의 실질적 정책 수행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성평등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법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업무 수행의 실질적 통로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성평등정책담당관을 모든 부서에 설치하고 현재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을 성평등위원회 산하로 편제하는 것은 타당한 방안으로 보인다. 또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 발제자의 제안처럼 사무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내에 두면 기존 여성정책과가 양성평등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했던 것과 대동소이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사무국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모성이 아니라 여성건강

현재 여성건강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과인데 여성건강을 모성에만 축소해서 바라본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여성의 건강을 임신과 출산이라는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만 간주하기 때문이다. 발제에는 여성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성평등가족청소년부는 여성건강을 생물학적인 보호를 넘어 사회경제적 요인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젠더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의 업무를 이관받아 모성보호를 포함한 여성건강정책의 조정 기능을 담당하여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가족 정책의 통합

아동·청소년·가족은 서로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며, 출생에서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생애주기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 발제자가 예로 든 독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은 생애주기를 고려해 아동·청소년·가족 정책 전반을 한 부서에서 맡아 집행하고 있다. 예컨대 성평등과 아동청소년가족 업무를 한 부서가 모두 맡는 또 다른 나라로는 핀란드가 있다. 아동청소년가족업무와 일·성평등이 모두 사회보건부 소관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아동 청소년 연령이 중복되는 데다 부처마다 분산된 정책과 서비스로 정책 간 연계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실정이다. 정보 공유와 자원 연계의 부족으로 서비스 간 중복 또는 공백이 발생하고, 기관 간 권한 충돌과 갈등도 종종 발생한다. 이용자도 혼란스러울뿐더러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령 기준에 따른 이관이나 중복 개입 등의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

원칙적으로 아동 청소년 가족 업무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안되는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여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을 시도했고 아동과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기본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실제 입법과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했고 각자의

입장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각각 제기됐다.

필자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아동정책관실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돼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과거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살펴 단계별 계획과 체계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과 청소년, 가족의 복지 향상이라는 통합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조직, 인력, 예산, 정보체계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청소년·가족 분야의 법률은 각기 별개로 존재하고 조문들도 중복, 상충하는 실정이다. 아동과 청소년 모두를 아우르는 아동·청소년 기본법 제정 등 통합 법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인권 기반의 보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전달체계가 완전히 통합되기 이전에는 각 부처와 지자체 소관부서를 연계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을 통해 중복과 상충,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토론3]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과제와 쟁점 : 지역의 경험을 중심으로

박혜경 (전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여성학 박사)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과제와 쟁점

- '성평등가족부' 등 추진체계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토론문 : 지역의 경험을 중심으로

박혜경 (전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여성학 박사)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회 장소 : 창비서교빌딩 50주년기념홀

토론자의 성평등정책 관련 이력

- 2003. 5. ~ 2007. 2. : 인천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장
※ 2005년 여성가족부 명칭변경(청소년, 가족 정책 통합), 200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2015. 3. ~ 2018. 9. : 강원도청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
강원도성별영향평가센터장,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 2015. 7.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2021. 3. ~ 2024. 3. : (재)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성평등’ 정책목적 명시

- 성평등 정책목적에 집중력 강화(성평등가족부 또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
 - 기존 여성가족부 하에서 정책의 대상이 여성만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왕왕 발생
 - 양평법 이후 여가부는 여성을 위한 부처에서 양성을 위한 부처로 오해
 - 정책일선에서 여가부의 성평등 가치와 목적에 대한 오해
: ‘여성정책=여성 수혜정책’ → ‘양성평등정책=양성 수혜 정책’

‘가족청소년’ 정책대상 명시와 이점과 과제

- 가족 등 정책대상을 부처명에 명시하는 현실적 이유 있음
 - 관련성 높은 정책영역 포괄하여 조직확대
 - 명칭에 새로이 추가된 영역을 나타내는 효과
- 현실적 운영상의 문제
 - 성평등 목적과 청소년 업무 등의 정합성 불충분
 - 성평등 업무는 여성정책국의 소관업무로 축소이해되는 경향 탈피전략과 계획 필요

발제자 제안에 동의

-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에 소년 및 남성 참여확대
 - 추가 제안 : 성인기로 전이가 일어나는 2030 청소년/청년 포함
 - 교육 대상으로만 아니라 강사로도 참여
-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강화
- 성평등위원회 강화 및 사무국설치,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 신설
- 소년·남성과 함께 하는 성평등문화의식 전환 위한 공론장, 남성고충상담

저출생정책총괄국 명칭의 문제

- '저출생 또는 저출산' 정책은 성평등정책에 대해 양면의 날로 작용
 - 일가정양립 강화, 여성고용지속 및 성평등가족질서 수립에 유리.
 - 출산율 줄지 않았으면 피부양인구비 증가로 엄청난 부양부담 증대
 - 한국사회 인구감소는 지금 너무 빠른 속도가 문제
 - 양적 성과로 정책성패 평가하는 인구정책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 대응해야 하는 사회상황은 인구구조의 고령화, 저출산은 그 원인들 중 하나.
- 대안 제안 : 재생산위기대응(국)
 - 세대재생산의 위기(저출산)와 자기재생산의 위기(일생활 양립). 둘 분리×
 - ※ 일가정양립 정책용어는 세대재생산의 위기로 축소 →현재 남녀청년들의 미래불안 이해 불충분. 출산자극정책에 대한 반발 초래

정책발전과 사회통합 위한 시민공론장 운영

논쟁적 정책발전방안에 대한 장기적 시민공론장 운영(장기적 운영)

- 운영원칙
 - 민주적 토론, 다양한 입장의 시민참여, 특정 종교교리 주장 금지
- 차별금지법 시민공론장
 - 주요 종교, 학자, 다양한 지역·성별·연령·입장의 시민들 참여
- 성교육 시민공론장
 - 학부모, 교육심리학자, 성연구자, 성교육 강사 등 참여
 - 목표 : 전문성 제고, 교육내용 합의도출, 강사 처우개선방안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

1.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와 조직 위상강화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대략 20년. 지역 센터 지정은 대략 10년 이상.
- 지표에 의한 성별영향평가에만 주력하고 있으나 젠더분석 강화필요.
 - 지역 성평등정책연구기관 활용 or 성별영향평가센터 기능확대
- 성별영향평가센터 조직위상 불안정, 전담연구원 고용불안정(준규직)
 - 정책컨설팅 및 전담연구원, 컨설턴트의 위상 낮은 상태로 유지
 - 컨설턴트들의 전문역량 한계
 -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와 지지에 걸림돌.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

2.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성별영향평가센터(혹은 양성평등센터)로 통합

- 여성친화도시사업은 시·군 등 기초지자체 성평등정책 건인 효과
-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관심 미흡
- 중앙센터에서 컨설턴트 지정, 간단한 사업일지에 따른 사례비 지급
 - 컨설팅의 질은 컨설턴트 개인 역량에 맡겨져 있고 훈련이나 재교육 등 관리체계 미흡 ※ 지역에 전문성 갖춘 컨설턴트 드물
- 컨설팅이 성평등 정책목적에 맞지 않은 내용으로 이루어져도 이를 인지, 예방, 평가 하기 위한 체계 없음.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

3. 지역간 성평등 정책 경쟁 강화

- 성평등지수 전국순위는 지자체 정책성적표처럼 여겨짐
 - 지역언론 관심 높고 광역지자체 및 광역의회는 민감
- 성평등지수 실질화 노력필요
 - 현재 성평등지수는 성격차(gender gap)지수 : 남녀 상황 모두 낙후한 경우 평등한 것으로 여겨짐.
 - 세부지수는 기존 통계이므로 성평등 관련성 미미한 경우 있음
- 중앙부처는 전국 성평등지수 발표만 아니라 실질화 위한 노력 필요.
 - ※ 예 17개 광역시도 동시조사 등(설문개발은 성평등가족부, 조사예산은 지자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

4. 업무중복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남성의 돌봄역량 강화는 가족센터의 사업?(발제자 제안)
 - 성평등교육기관, 새일센터, 가족센터 모두 남성 돌봄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교육이라면 전문성 갖춘 연구기관 등의 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 소년과 남성 고충상담 필요(발제에 동의).
 - 성평등 정책전달 과정에서 성평등의 기계적 적용사례. 이를 검토하고 바로잡음
 - 여성들의 성평등 의식제고 노력도 필요(정책홍보에도 이 내용 추가)
- : 남성 1차적생계부양자 모델 잔존. 이는 성평등정책에 대한 반발의 한 이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

5. 성교육 내실화

- 성범죄 다양화에 따라 성교육의 중요성 증대
- 성교육 관련 찬반논쟁으로 인해 성교육은 계륵과 같이 취급
- 교육부와 여가부가 공동으로 만든 성교육 표준교안 참고는 임의적
 - 강사들(성문화센터 직원이나 보건교사 등)이 교안 만들어 사용
 - 예산부족하여 전문가 자문도 미흡한 실정
- 지역에서 성교육은 복지나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이 위탁운영. 성평등 목적과의 정합성, 성인지 관점 충분한지 살펴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6. 협치 위한 지역 성평등운동조직 역량강화 방안모색

- 여성단체는 관의 예산에 의존하는 관변단체라는 평가/오해
 - 여연 지역지부는 7개. 여연의 회원단체로 가입하지 않은 지역단체들 있음
 - ※ 일부 광역시도에는 여성연대 있음.
 -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실질적 성평등 정책과 사업의 주된 파트너
 - 활동력 있는 여성단체들의 역량강화 위한 지자체의 노력 강화방안은?
- 지역의 자생적 페미니즘 조직 및 활동가 지원전략 모색
 - 지역 페미니스트활동가 세대재생산이 관철. 이의 격려 바람직.
 - ※ 지자체 사업이지만 관 주도 사업의 한계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

7. 정책에 대한 내부 지지 제고

- 모든 사업별 예산증액
 - 정책의 내부 관련자들은 곧 외부에 대한 정책홍보자들이기도 함
 - 여가부 관할 조직 인력의 낮은 처우와 낮은 사업예산이 담당자의 사기와 정책에 대한 지지 떨어뜨림.
- 지자체 정책담당자 격려 및 역량강화 위한 집중적 연수프로그램 강화
 - ※ 해외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등
- 쉼터 등 생활시설 종사인력의 처우체계 개편과 팬데믹 안전대책 수립(보건부와 공동)



[토론4]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국가 행정체계를 위한 제언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1. 제대로 작동한 적 없는 「여성경제활동법」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약칭: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약칭: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것은 2022년 6월이다. 기존의 협소한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법에서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법의 목적 자체가 달라졌다. 「여성경제활동법」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이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경력단절여성법의 기반에서 하던 역할보다 더 폭 넓은 기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법은 달라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못 했다.

- 법이 바뀐 지 3년이 지난 올해 4월 17일 겨우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을 뿐이다. 발표된 계획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던 새일센터 기반에서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기존 정책 내용이 주요 골자인 것은 여전하다. 여기에 청년 여성을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을 뿐이다. 법은 전면 개정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행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미비한 현실이다.

- 여성가족부는 「여성경제활동법」의 소관부처로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고유업무로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 관련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 노동현장에서의 성평등 노동 실현은 여성 개인의 자립 측면 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및 민생안정, 시민적 권리보장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OECD 가입한 1996년 이래 단 한번도 성별임금격차 1위라는 오명을 벗은 일이 없다. 이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동현장 개입과 과감한 정책 없이는 개선되기 어렵다.

- 현재 성평등 노동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부서는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20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비롯한 7명,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9명, 경력단절여성지원과 14명이 전부다. 천만명이 넘는 여성노동자를 위한 중앙정부의 인력이 고작 50명이 전부다. 담당자들의 역할은 육아휴직 지원제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여성 고용동향 분석,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제도 운영 등이다. 대부분 행정집행에 치중되어 있다. 노동시장 전반을 살펴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역할과 책임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 현재 여성가족부의 여성인력개발과와 경력단절여성지원과는 전부개정 이전의 경력단절여성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부서이다. 법이 전부 개정된 상태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2.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노동 역할 강화

- 현재 고용노동부조차 고용평등을 담당하는 정확한 목적의 국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통합고용정책국 안에 고령자,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을 통괄하고 있을 뿐이다. 여성가족부 안에 고용평등을 목적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현재의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 구조가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가 집행하는 실무 행정 중심 기능과는 차별되는 역할의 배치가 가능하다.
- 여성가족부가 가져가야 할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역할은 국가적 차원의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짜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 이를 각 부처별로 배분하여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추동하는 기능이다. 「여성경제활동촉진법」 안에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 시책마련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2023년 발표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성평등 노동 관련 계획은 몹시도 협소하고 제한적이다. 본 계획에 명기된 성별임금격차 개선 정책은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성별임금격차 현황 모니터링 추진, 성별임금격차 관련 통계 세분화가 전부다.

그냥 들여다만 보겠다는 것이다.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에는 돌봄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와 노동권 침해 및 폭력, 감정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방안 마련이 전부이다.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시간제 호출노동이라는 고용형태, 지나치게 낮은 임금 개선이 핵심이지만 이와 관련한 문제의식은 어디에도 없다. 중앙부처부터 지자체까지 성평등 노동 실현을 통괄하는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각 조직에 요구, 추동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보수적인 지역의 지자체들은 성평등 노동과 관련한 고민이 전혀 없고, 고민은 있으나 방향을 잡지 못한 지자체들도 많다. 여성가족부에 이들을 조직하고 지자체 내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 국가이다. 성별임금격차를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 역할을 여성가족부가 가져가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장은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에 따른 성차별이 심각하다. 남성 직종에 여성이 진입할 때 벌어지는 거센 저항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기 진로 교육부터 시작하여 기업이 여성을 유입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등과 같이 '성평등직종전환훈련' 마련. 기업을 훈련 대상 설정할 수도 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단계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역할,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지역소멸 방지의 핵심은 지역에 청년 여성들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은 단기계약직으로 청년 여성노동자를 소모한다. 청년 여성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일자리와 직장문화를 모니터링하고 괜찮은 일자리로 바꾸어 나가는 역할을 여성가족부가 가져가면 좋을 것이다.

- 또한 성평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현장의 성차별, 성희롱에 대해 싸우는 여성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노동현장에 만연한 여성혐오, 성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노동현장의 페미니즘 사상 검증 문제에 대해 정부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는 피해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대며 묵묵부답이다. 여성가족부는 노동자성

을 살피지 않고 성평등 노동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가 없애 버린 위드유센터와 같은 기능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위드유센터는 30인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위드유 컨설팅 전문 위원단’을 통해 기업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지원,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기업과 협업한 조직문화 캠페인, 피해자 법률 동행 지원 등을 진행했던 기관이다. 정책대상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은 여성들이 집중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방적 기능 중심의 운영으로 여가부가 기존과는 다른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 2011년 5월 호주 연방공정근로위원회는 근로의 성질 및 관련 기술, 책임,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내 비교대상 임금요율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은 동등하거나 비교 가능한 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임시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2년 2월의 최종결정에서 노동조합과 연방정부가 제시한 임금요율을 받아들이고 19~41%의 인상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8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호주 정부는 2012년부터 총 28억 AUD³⁴⁾의 예산을 배정하여 9년에 걸쳐 임금을 조정하였다 구미영외, 2021, ‘돌봄노동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직무가치 평가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41-142

. 그리고 얼마 전 호주 연방공정근로위원회는 보육교사, 의료전문가 등 5개 직종 노동자들이 성별에 따른 저평가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판단했다. 여성이 지배적인 산업에서 일하는 50만명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인상을 권고했고 호주정부는 정부 소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약속하고 예산을 책정했다. 여성가족부가 호주의 공정근로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고 운영할 수도 있다.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가 개별 사안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구조의 문제를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만들어지면 가능하다.

3.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재건

-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2000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이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여성노동자들의 고용평등을 위해 상담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활동 등을 진행해 왔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노동상담을 진행한 유일한 상담소로 전국 19개소에서 24년간 활발하게 활동해 온 여성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2023년, 민간에서 해 온 상담을 정부가 원스톱으로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2024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8개 지방노동청과 지청에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 1년간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해낸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지역 노동청은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담 인력 채용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상담 인력이 입퇴사를 반복하는 등 안정적인 상담을 제공하지 못했다. 당연한 결과로 전체 상담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상담의 질이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가 1,100건이 넘었지만(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직전 년도에 수행한 직장 내 성희롱 상담 2,999건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 이 중 단 1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7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다. 900건이 넘는 사건은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어렵게 노동청 진정 접수를 하고도 ‘손에 쥔 결과가 아무 것도 없는 여성노동자’가 900인이 넘는다는 소리이다.

-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 전국의 11개 여성노동자회는 어렵게 상담실을 운영해 가고 있다. 상담실로 차마 믿기 어려운 상담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 고용평등상담실에 상담을 했더니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전에는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AI로 검색해 여성노동자회를 찾아왔다는 내담자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피해 신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더니 ‘진정 접수를 해봤자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오히려 당신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며 진정 접수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힘들게 싸우느니 실업급여를 받으라며 실업급여팁을 연결해주겠다’는 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권리구제 포기를 유도’한 상담의 공통점은 모두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사건이었다.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재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진술 동행과 심리정서 돌봄 등 상담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가 가능한 사건’들이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2차 가해, 재발 위험이 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이런 사건 내담자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해 왔다.

사건 해결 과정 동행과 회사와의 협상, 노무사·변호사 연계, 심리상담 제공 등과 함께 반복된 재상담을 진행해 왔다. 여성노동상담은 이러한 밀착상담이 필수적이다. 손쉽게 해결되는 일은 없다. 정부의 고용평등상담실은 민간이 해왔던 역할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놓았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복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4. 지방노동관서의 고용평등과 재설치

-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관서에 있던 고용평등과는 지역 안에서의 노동시장 성차별 시정과 모성권,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관장하였다. 허나 이명박 정부 시기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고용평등과는 근로기준과 등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형체가 없어진 고용평등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재설치되지 않고 있다. 고용평등과가 있던 시절, 민간고용평등상담실과 고용평등과 및 근로감독관의 협업 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취합하고 이를 고용평등과와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고 개선책과 변화를 위한 고민을 함께 하였다. 오래된 구조가 아니다보니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이었고, 정착되어 가던 과정 중에 있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고용평등과의 부재로 지역 내의 고용평등 기능은 공백상태가 되어 버렸다. 본 회는 그 이후 현재까지도 고용평등과의 재설치를 요구해오고 있지만 어떤 정부도 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지역 고용평등을 위한 행정 구조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만들어야만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사라진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전국의 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연합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 여성연합 정기 및 일시 후원하기 : <http://women21.or.kr/donate>
- 계좌 : 국민은행 347-25-0008-902 예금주: (사)한국여성단체연합
- 문자 후원 (회당 3천원)
 - ① 번호: #2540-0308 입력(※'#'을 꼭 넣어야 합니다)
 - ② 응원메시지 작성 → 전송
 - ③ 3천원 문자 후원 끝!



- T.02-313-1632 / F.02-313-1649
- E-mail : kwau@women21.or.kr
- 홈페이지 : <http://women21.or.kr/>
- 트위터 : @kwau38 • 페이스북 : /kwau38 • 인스타그램 @kwau_women_21
- 주소 :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여성미래센터 501호